

美國의 酒類管理制度



白樂昇

(前, 大韓酒類工業協會 會長)

目 次

- 머 리 말
- IV. California 주 헌법 第20條 22項
- 酒類販賣에 關한 州의 規制 -
- V. California州 酒類管理法
- 事業管理法 第9部 酒類事業 -
- Chap 1. 總則 및 定義
- Chap 1.5. 酒類管理廳 및 救濟手續
- 第1節 酒類管理廳
- 第2節 禁止行爲
- 第3節 酒類管理法不服審査委員會
- 第4節 管理廳의 決定에 대한
審査請求
- 第5節 司法審査
- 第6節 免許停止의 中止
- Chap 2. 法律上 認定되는
無免許取扱去來

머 리 말

酒類工業誌(88年 9月)에 寄稿한바 있는 美國의 酒類管理制度 (Alcoholic Beverage Contro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中 第一章에서 第三章까지의 머리부분 紹介에 이어 今般에는 California州 憲法中 酒類販賣에 關한 州의 規制 및 California州의 憲法管理法을 紹介함으로써 美國 州政府의 酒類販賣 및 流通의 規制, 그리고 酒類行政의 法的 뒷받침을 聯邦政府의 行政制度와 比較해 볼 수 있고, 또한 보다 細分化되고 具體化 되어있는 制度와 權限 및 이의 管理, 執行에 따르는 指針, 나아가 不服에 對한 救濟方法 등 深層에 갈린 酒類産業 保護育成策과 社會의 安全과 福祉, 平穩과 道德에 關한 精神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資料들이 많아 酒類産業의 發展의 改善에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昨今의 民主化와 開放化의 要求가 우리나라 酒類産業에 있어서도 補完과 改善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있는 現實狀況 속에서 先進國의 酒類管理 制度를 概觀하여 他山之石으로 삼는 계기가 되는 조그만한 보탬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紙面上 California州 事業管理法 第9部 酒類産業의 Chapt 2 까지 만을 일단 本誌에 紹介하고 추후 남은 Chapt 를 直譯 紹介할까 한다.

IV. California 州憲法 第20條 22項

- 酒類販賣에 關한 州의 規制 -

캘리포니아州는 聯邦內國歲入法에 基礎하여 州

내에 있어서의 酒類의 製造, 販賣, 購入, 所持 및 輸送에 對해 免許 및 規制를 行하는 排他的 權限을 保有하며, 國際 및 州際間的 去來規制에 關한 聯邦法에 따라, 酒類의 州內로의 輸入 및 州外로의 輸出을 規制하는 排他的 權限을 갖는다. 이들 權限의 行使에 關하여 州議會는, 州 또는 그의 機關을 酒類의 製造者 또는 販賣者로 指定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든 酒類는, 州議會가 定하는 法律에 따라 免許가 주어지는 事業場(施設)에서 購入, 販賣, 提供, 消費 및 其他의 處分이 行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事業場(施設)의 免許의 規定에 있어, 議會는 特히 免許上 明示되는 酒類를 店內 消費를 爲해 販賣 또는 提供할 수 있는 다음의 種類의 販賣場에 對한 免許를 定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a) 州議會가 定하는 眞正한 公開食堂

(b) 眞正한 公開食堂에 있어서와 같이 食物의 販賣 또는 提供을 行하는 것은 아니지만, 州議會가 酒類의 販賣, 또는 提供에 부수하여 食品의 販賣 또는 提供을 認定하고 있는 公開酒類販賣場. 但, 21歲 未滿의 者는 適法한 取扱 以外의 경우에는 當該 販賣場에 出入내지는 留하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c) 麥酒만을 販賣, 提供하는 公開 酒類販賣場.

(d) 州議會가 부과할 수 있는 條件下에서, 鐵道の 食堂車, 特別客車, 旅客船, 旅客機 및 1 年以上 適法하게 經營을 하고 있는 眞正한 클럽酒類販賣場.

21歲 未滿의 者에 對해 酒類를 販賣, 提供, 供與하거나 또는 販賣, 供給시키거나 혹은 贈與하는 것을 禁止한다. 어떠한 者도 21歲 未滿의 者에 對해, 酒類를 販賣, 提供, 供與하거나 또는 販賣, 提供, 供與시켜서는 안되며, 21歲 未滿의 者는, 酒類를 購入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酒類管理庁 長官은 酒類管理庁의 長으로서 州上院議員 總數의 過半數의 承認에 依해 知事로부터 任命되며 知事の 指示에 따라 職務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知事は 長官을 解任시킬 수 있으며 州議會는, 職務怠慢, 不正行爲 또는 職務 不適當을 理由로 하여 各議員의 總議員 過半數의 同意로서 長官을 解任시키는 權限을 갖는다.

長官은 憲法 第24條 4項에 따라 長官이 任命하는 것으로 認定되고 있는 者 外에, 一般 公務가 免除되는 3名의 者를 任命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酒類管理庁은, 本項에서 規定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州議會에 의해 制定된 法律에 따라 州內에 있어서 酒類의 製造, 輸入 및 販賣의 免許를 行하고 이를 위한 免許手數料를 徵收하는 排他的 權限을 保有하는 것으로 한다.

管理庁은 免許의 發行 또는 繼續이 公共의 福祉 또는 道德에 反하거나 혹은 免許의 申請者 또는 保有者가 破廉恥 犯罪를 犯했다는 充分한 事由를 認定했을 경우에는 그의 裁量에 따라 酒類免許의 拒絶, 停止 또는 取消시키는 權限을 保有하는 것으로 한다. 管理庁으로부터 免許를 받은 者 以外의 者가 州內에서 酒類를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酒類管理法 不服審査委員會는 上院의 總議員의 過半數의 承認에 따라, 知事로부터 任命되는 3名으로 構成된다. 各委員은 그의 任命時點에 있어 他委員의 居住하는 郡과 다른 郡의 居住者가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知事に 依해 解任되는 것으로 하고 州議會는 職務怠慢, 不正行爲 또는 職務不適當을 理由로 해서 各議員의 總議員의 過半數의 同意로서 委員을 解任하는 權限을 갖는 것으로 한다.

管理庁의 違反處罰命令 혹은 酒類의 製造, 輸

入 또는 販賣免許의 發行, 拒絕, 移轉, 停止 또는 取消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 이를 不滿으로 하는 者로부터 不服申立이 있을 경우, 不服審査委員會는 州議會로부터 부과된 制限에 따라 當該決定을 審査하는 것으로 한다. 審査에 있어 不服審査委員會는 管理庁이 採用한 證據以外의 증거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不服審査委員會에 의해 審査되는 管理庁의 決定範圍는, 管理庁이 그의 權限에 基礎하여 또는 權限의 範圍에서 決定을 했느냐 아니냐, 管理庁이 法律이 定하는 節次에 따라 事案의 處理를 행하였느냐 아니냐, 當該決定이 事實認定에 의해 根據되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當該事實認定이 全爭訟記錄에 비추어 實質의 證據로 뒷받침되어져 있느냐 아니냐의 爭點에 限하는 것으로 한다. 合理的인 範圍內의 職務遂行에서 採用되지 않았다고 判斷되는 關聯證據 또는 違法的으로 排除된 關聯證據가 있다고 認定하는 不服申立事案에 있어서는 不服審査委員會는 이들 證據에 비추어 再審査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當該事件을 管理庁에 되돌리는 命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其他의 不服申立事案에 있어서는 不服審査委員會는 管理庁의 決定을 承認하거나 또는 取消하는 趣旨의 들 중 하나의 命令을 하는 것으로 한다. 管理庁의 決定을 取消한다는 뜻의 命令의 경우는 不服審査委員會는 當該命令에 비추어 事件의 再審査를 行할것, 管理庁이 法에 依해 特別히 부과되고 있는 다음의 段階의 行爲를 行할 것을 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同命令은 法律에 의해 管理庁에 주어진 裁量權을 制限하거나 또는 左右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不服審査委員會에 依한 命令은, 管理庁長官 또는 當該 命令에 不服하는 當事者의 申立에 따라 司法審査에 回付되는 것으로 한다.

管理庁長官 또는 不服審査委員會의 어떤 멤버를 解任하는 共同決議는 上院議員 5名 또는

下院議員 10名의 署名에 의해서만 州議會에 提案된다. 州議會가 다른 規定을 定할때까지는, 眞正한 호텔, 레스토랑, 카페, 케피테리아, 鐵道の 食堂車 또는 特別客車, 客船 및 其他 公開된 食堂 및 1年以上 適法的으로 管理되고 있는 眞正한 클럽에 있어서, 酒類의 保管, 購入, 販賣 提供 및 其他의 處分하는 權限 그리고 一般客에게 公開되고 있는 販賣場에 있어서의 麥酒의 保管, 購入, 販賣, 提供 또는 其他의 處分하는 權限은, 現行의 酒類管理法이 本項의 規定에 違反하지 않는 範圍에서 當該酒類管理法에 根據하여 免許되고 規制되는 것으로 한다. 但, 眞正한 호텔, 레스토랑, 카페, 케피테리아, 鐵道の 食堂車 및 特別客車, 客船 그리고 其他의 公開食堂 및 1年以上 適法的으로 管理되고 있는 眞正한 클럽에 對해 酒類의 保管, 購入, 販賣, 提供 또는 其他의 處分하는 權限에 關해 徵收되는 免許의 手數料는, 本項의 發効日에 있어서 定해져 있는 金額으로 하고 以後 州議會의 改訂 權限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州公平委員會는 州內에 있어서의 酒類의 製造 輸入 및 販賣에 關하여 議會가 認定하는 稅를 賦課 또는 徵收하는 것으로 한다.

州議會는 合理的인 制限에 따라, 販賣가 行해지는 事業場外의 場所에서 消費되는 오리지날 페케이지에 들은 酒類를 小賣販賣店에서 販賣하는 것을 認定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本項의 第一段에 規定하는 營業을 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모든 免許, 特히 特定の 또는 모든 種類의 酒類를 製造, 釀造, 加工處理, 輸入, 輸出, 都賣, 配送 및 販賣하기 위해 必要한 免許의 免許發行에 關하여 法律을 定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州議會는 適當하다고 간주하는 方法에 따라 州와 市, 郡과 市, 郡과 州 相互間에 있어서의 本項에 根據하여 徵收되는 免許手數料의 配分에 關해 法律을 定하는 것으로 한다. 本項에 矛

盾하는 憲法 其他의 法令의 規定은 모두 廢止 된다.

本項의 規定은 其他의 法令을 앞서서 有效한 것으로 하지만 本條의 規定을 施行하기 위하여 이것과 矛盾되지 않는 法律을 州議會가 制定하는 것을 妨害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다.

本修訂條項은 1957年 1月 1日에 發効한다.

V. California 州酒類管理法

- California 州事業管理法

第 9 部 酒類事業 -

Chap I. 總則 및 定義

§. 23000 (名稱)

本法典 第 9 部の 名稱은 酒類管理法이라 하고 同名으로서 引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3001 (本法의 目的)

本法은 無免許 및 違法的 酒類의 製造, 販賣 및 處分과정에서 發生하는 害惡을 除去하고 酒類의 使用 및 消費에 對한 抑制의 精神을 強行하기 위하여, 州民의 安全, 福祉, 平穩 및 道德에 關한 州의 警察權을 行使하는 것이다. 이에 本法의 主題가 高度로 州 및 全州民의 經濟的, 社會的 및 道德上의 福祉 및 安全에 關連되는 것이라는 것을 宣言한다. 本法의 모든 規定은 이들 目的의 達成을 위해 目的的으로 解釋되는 것으로 한다.

§. 23002 (解釋)

文脈上 다르게 解釋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除外하고 本章이 定하는 定義 및 總則은 本法의 解釋을 拘束하는 것으로 한다.

§. 23003 (알콜)

알콜이란 原料 및 製造過程의 如何를 不問하고 에칠알콜, 에칠水酸化物 및 Wine Spirit 를 말하는 것이다.

§. 23004 (酒類)

酒類란 알콜, 스피릿, 리커, 와인,麥酒 및 알콜, 스피릿, 와인 또는麥酒를 包含하는 液体 및 固体로서 濃度 0.5%以上의 알콜을 含有하고 그대로 또는 其他의 物質과 稀釋, 混合 또는 混和함으로서 飲料로 提供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3005 (蒸溜酒)

蒸溜酒란 醱酵된 農産物을 蒸溜함으로서 얻어지는 酒類를 뜻하며 飲用알콜, 와인의 蒸溜酒 위스키, 럼, 브랜디, 진 및 이들의 稀釋物 그리고 混合物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23006 (麥酒)

麥酒란 大麥, 麥芽, 호프, 其他의 類似産物의 煮出液 혹은 煎汁을 醱酵함으로서 얻어지는 알콜飲料 또는 물로 稀釋한 이들의 混合物을 뜻하며 에일 (Ale) 麥酒, 포터 (Porter) 麥酒, 브라운 (Brown) 麥酒, 스타우트 (Stout) 麥酒, 라가 (lager) 麥酒, 輕度麥酒, 強度麥酒를 包含하지만 日本의 라이스 와인으로 알려져 있는 清酒는 包含되지 않는다.

§. 23007 (와인)

와인이란 完熟의 포도 其他 天然 또는 強化糖分을 包含하는 農産物의 果汁을 通常 알콜 醱酵를 行하는데서 얻어지는 產品, 혹은 一定의 農産物 또는 와인의 原料가 되는 作物로부터 蒸溜되는 포도브랜디, 果實브랜디 혹은 와인스피릿이 添加된 當該 알콜飲料 및 其他의 精溜된 와인 製品을 말하며 그의 名稱을 不問하고 15% 以上の 調味料, 着色料, 混合物을 包含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아가 알콜容量 濃度 24% 以下の 것에 限하는 것으로 한다. 버무스 및 日本 라이스 와인으로 불리는 清酒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規定은 粗惡한 酒類 혹은 偽造品銘 또는 라벨을 添付한 酒類의 製造, 販賣 및 輸送을 防止하는 法律을 執行하는 州厚生省의 權限 또는 責務에 影響을 주거나 또는 制限하는

것이 아니고 本條에 包含되는 와인의 定義는 本法의 目的에 限定되며 粗惡酒類 혹은 偽造品銘 또는 라벨을 添付하는 酒類의 製造, 販賣 및 輸送을 防止하는 어떠한 法律에 對해서도 適用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默時的으로 이를 廢止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한다.

§. 23008(人(者))

人(者)이란 自然人, 團體, 組合, 合辯會社, 社團會社, 遺産, 信託財産, 事業信託, 收益管理人, 신디케이트 또는 하나의 單位로서 行爲하는 其他의 그룹 및 人的結合을 包含하는 것으로 하고 그의 單數 複數를 묻지 않는다.

§. 23009(免許權者)

免許權者란 酒類管理庁으로부터 發行되는 免許를 保有한 者를 말한다.

§. 23010(納稅者)

納稅者란 歲入 및 保稅에 關한 法律(Revenue And Taxation Code) 第2部 Part 14에 따라 稅金을 納付해야 할 義務를 가진 者를 말한다.

§. 23011(販賣員)

販賣員이란 免許權者에 對하여 酒類의 注文을 勸誘하거나 또는 이를 받는 者를 말한다.

§. 23012(麥酒製造者)

麥酒製造者란 麥酒製造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 23013(와인釀造者)

와인釀造者란 포도, 딸기, 其他의 果實을 와인으로 轉化시키는 設備 및 備品을 保有하고 와인을 製造하는 者를 말한다. 但, 年間 20가론을 넘지 않는 와인을 自家消費하기 위하여 製造하는 者는 當該 製造行爲를 理由로 本法中의 와인 製造者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3013.5(와인브랜드)

와인브랜드란 內國歲入法에 根據하는 許可에 따라 保稅와인 貯藏所를 管理하는 權限을 부여받고 있으나, 포도, 딸기, 其他의 果實을

와인으로 轉化시키는 設備, 備品을 保有하지 않고 商業的分量의 와인의 製造에 從事하지 않는 者를 말한다. 但, 年間 200가론을 넘지 않는 와인의 製造 또는 브랜드(混合)를 行하는 者는 이와같은 製造 또는 브랜드를 行하는 것을 理由로 本法上의 와인 브랜드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3014(브랜드製造者)

브랜드製造者란 브랜드製造에 從事하며 其他의 蒸溜酒의 製造를 行하지 않는 者를 말한다.

§. 23015(蒸溜酒製造者)

蒸溜酒製造者란 天然의 釀酵原料로부터 또는 其他의 方法에 의해 蒸溜酒를 製造하는 者를 말한다.

§. 23016(精溜者)

精溜者란 蒸溜, 混和, 여과, 其他의 方法에 의해 蒸溜酒에 着色, 맛내기, 其他의 加工處理를 行하는 모든 者를 말한다.

§. 23017(輸入者)

輸入者란 ?

(a) 州内에서 使用하거나 또는 引渡할 目的으로 州外로부터 州内에 搬入되는 酒類의 荷受人.

(b) 本法에 根據하여 免許를 받는 一般倉庫를 除外하고 州内에서 使用하거나 또는 引渡할 目的으로 州外로부터 州内에 搬入되는 酒類의 引渡를 最初로 받는 者.

(c) 酒類의 引渡가 州外의 一地点으로부터 酒類를 輸送하는 輸送業者에 의해 無免許者에 對하여 行해지는 경우에 있어 美國 合衆國 領土内에 居住하는 無免許者에게 酒類를 販賣하는 輸入免許를 받은 者.

(d) 州内에 있어서의 使用 또는 引渡를 위하여 州外로부터 州内로 搬入되는 酒類의 送付先이 定해져 있지 않은 酒類의 搬入者.

免許輸入者 또는 州内에 事務所를 갖지 않고 있는 第三者의 代理人으로서 行爲하는 免許通關 代理人은 合衆國 內國歲入保稅倉庫 또는 合

衆國 關稅保稅倉庫에 委託되는 酒類의 輸入者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 23018 (輸出者)

輸出者란 州外에서 使用하고 引渡 또는 販賣하기 위하여 州内に 存在하는 酒類의 販賣, 引渡, 또는 出荷를 行하는 者를 말한다.

§. 23019 (通關代理人)

通關代理人이란 合衆國 內國歲入保稅倉庫 또는 合衆國 關稅保稅倉庫內에 있어 州内に 酒類를 輸入하는 것에 關하여 輸入者로서의 免許를 받고 있는者 또는 州外에 事務所를 두는 者를 위하여 代理人 혹은 부로커로서 行爲하는 權限을 부여받은 者를 말한다.

§. 23020 (와인부로커)

와인부로커란 免許保有者에 의하여 正式으로 顧用되고 있는 販賣員 以外の 者로서, 手數料를 받는 것을 目的으로 他人을 위하여 또는 他人의 名義로 와인의 販賣 또는 購入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 23021 (都賣人)

都賣人이란 准州 또는 屬領을 際外하는 美國 合衆國內 또는 美國 合衆國內의 어떤 州와 境界를 共有하는 外國內에 있어서 酒類의 取扱의 仲介人 또는 都賣販賣 商人으로서 事業을 行하고 있는 製造者, 와인釀造者 또는 精溜者 以外の 者를 말한다.

§. 23022 (工業用 알콜取扱인)

工業用 알콜取扱인이란 商去來, 專門的 職業 및 工業用的 것으로 飲料用 以外の 1가론 以上 페케지入의 알콜 또는 蒸溜酒를 販賣하는 者를 말한다.

§. 23023 (小賣人)

小賣人이란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 또는 店外消費 酒類販賣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 23024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란 麥酒店內消費 販賣免許 麥酒, 와인, 店內消費 販賣免許 및 店

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 그리고 季節事業을 위한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를 말한다.

§. 23025 (販賣)

販賣란 對價를 받고 行해지는 酒類에 對한 權利의 移轉去來를 말하며 注文에 따르는 酒類의 引渡, 酒類의 注文의 권유 및 이를 받아드리는 行爲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但, 免許權者에 의한 酒類의 返品行爲를 包含하지 않는다.

§. 23026 (小賣販賣)

小賣販賣란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權者 또는 店外消費 酒類販賣免許權者에 의한 消費를 爲한 酒類의 販賣를 말한다. 再販을 予定하는 販賣는 包含하지 않는다.

§. 23027 (都賣販賣)

都賣販賣란 再販賣를 目的으로 免許權者에 對해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 23028 (페케지)

페케지란 콜크마개, 스톱과, 캡, 其他의 方法에 따라 封印되는 酒類를 넣기 위해 使用하는 容器를 말한다.

§. 23029 (케이스)

케이스 또는 오리지날 케이스란 製造者 또는 와인釀造者가 輸送 또는 出荷하기 위해 酒類를 넣는데 使用하는 標準의 상자 또는 카튼 상자를 말한다.

§. 23030 (瓶入)

瓶入한다 또는 페케지 한다 하는것은 瓶入, 통입 또는 其他의 方法에 의해 酒類를 容器內에 넣는 것을 말한다.

§. 23031 (가론 또는 와인가론)

가론 또는 와인가론이란 231立方인치 (3.785 ℓ)의 液体의 計量單位를 말한다.

§. 23032 (푸루프 스피릿)

푸루프 스피릿 (Proof Spirit)이란 華氏60度에 있어서 比重 0.7939의 純 에칠알콜을 50% 包含하는 酒類를 말한다.

§. 23033 (푸루프 가론)

푸루프 가른이란 Proop Spirt 1가른 또는 同量의 알콜을 말한다.

§. 23034 (蒸溜器)

蒸溜器란 알콜, 알콜溶液 또는 그의 混合物로부터 알콜, 알콜氣體 또는 알콜溶解를 分離하기 爲하여 使用하는 器具를 말한다. 但, 實驗室用 또는 蒸溜水 其他의 酒類以外의 物質을 蒸溜하기 爲하는 것만으로 使用되는 蒸溜器나 器具를 包含하지 않는다.

§. 23035 (私用倉庫)

私用倉庫란 免許權者가 酒類의 貯藏을 爲하여 保有하는 免許事業場 以外의 場所를 말한다. 免許權者가 알콜 또는 酒類의 販賣를 爲해 保有하는 事業場(販賣場)을 除外한다.

§. 23036 (一般倉庫)

一般倉庫란 他의 免許權者의 計算에 의한 알콜 또는 酒類를 貯藏하기 爲한 場所(販賣場은 除外함)로서 免許를 받은 場所를 말한다. 合衆國關稅保稅倉庫 또는 合衆國內國歲入保稅倉庫가 他의 免許權者의 計算에 있어서 酒類를 貯藏하기 爲해 使用되고 있을 境遇에는 이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23037 (클럽, 招待客 等)

클럽이란 營利目的을 爲한 것이 아니고 社交, 스포츠의 目的을 爲한 것만으로 經營되는 施設을 所有, 賃借 또는 保有하는 團體로서 眞正한 會員리스트를 가지고 會員의 過半數가 每年 1回 以上 會費를 支拂하고, 그 財産 및 利益은 會員에 歸屬되며 會員 및 그의 眞正한 會員의 招待客 等에 對해서만 酒類를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招待客이란 宿泊客 또는 特別한 모임을 爲하여 特別히 招待를 받아 이에 應하는 者를 말한다.

§. 23038 (眞正한 公開食堂, 食事)

眞正한 公開食堂이란, 有償으로 利用客에 對해 食事を 提供하기 爲하여 常時 그리고 眞正하게 使用되고 公開되어 있는 場所를 말하며,

通常의 食事に 必要한 各種의 食物을 調理하기 爲한 機器를 備置한 適切한 厨房施設을 保有하고 나아가 當該厨房施設은, 事業場內에 있어서 食物을 保存하는데 適切한 冷蔵 施設을 具備하고 衛生的으로 管理되어야 하며 保健局의 모든 規制를 遵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食事란 營業時間內에 一般客들로부터 注文되는 各種의 日常的 食事を 말한다. 샌드위치 또는 사라다만의 食物을 提供하는 경우는, 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利用客이란 食事が 提供되는 營業時間 內에 있어 食事의 提供를 받기 爲해 來訪하여, 食事を 注文하고 提供를 받는 者를 말한다. 但, 本條는 酒類의 飲酒와 더불어 食事が 販賣 또는 購入되는 것을 義務지우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안된다.

§. 23038. 1 (會議場, 展示場, 公會堂)

第23038의 規定에 拘束되지 않고 眞正한 公開食堂이란, California州, 公共法人化되어 있는 市, 郡 또는 California州의 公社가 所有 또는 賃借하고 있으면서, 一團의 利用客을 爲해 常時 그리고 正規로 利用, 公開되고 이의 利用에 關連하여 一團의 利用客에 對해 有償으로 食事を 供給하기 爲해 通常의 食事を 準備하는 機能을 가지고 나아가 保健局의 모든 規制에 따라 施設內에 있어서의 食物을 保存하기 爲한 相應한 冷蔵施設을 具備하고 衛生的으로 維持되고 있는 適切한 厨房施設을 갖추고 있는 會議場, 展示場 및 公會堂(以下 施設로서 引用함)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서 말하는 食事란 런치 또는 디너로서 一般的으로 注文되는 食事を 말한다. 但, 샌드위치 또는 사라다만의 食事의 提供은 이 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本條가 말하는 一團의 利用客이란 本條에 規定하는 「施設」을 訪問하여 使用 目的에 따라 「施設」을 利用하고 그 利用과 관련하여 一團으로서 食事を 注文하고 그 提供을 받는 者를 말한다.

本條가 말하는 集會場이란 콘벤션홀, 展示廳, 公會堂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建築物이며 會議, 演劇, 展覽會, 스포츠 센터, 陳列會, 미팅 등의 施設에 使用되는 것을 말한다. 本條의 規定은 「施設」 또는 그 一部分의 利用이 行해지는 모든날에 食事が 提供되는 것을 要求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안된다. 但, 施設의 利用일에 施設管理者에게 通知하고 注文했을 경우, 食사의 提供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하고 一團의 利用客에 依한 利用은 營業日の 적어도 25% 以上이어야 한다.

本條의 規定은, 酒類의 飲酒와 共히 食事が 販賣 또는 購入되는 것을 義務지우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038. 2 (野球場, 스타디움, 콜로시움)

第2303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店內消費 麥酒 및 와인 販賣免許의 發行上, 眞正한 公開食堂이란 프로스포츠, 이벤트의 觀客에 提供하는 食品을 準備하기 위하여 廚房施設을 保有하고 있는 野球場, 스타디움, 콜로시움을 뜻하는 것이다.

§. 23039 (公開酒類販賣場)

(a) 公開酒類販賣場

① 店內消費 麥酒販賣 免許以外的 免許를 付與 받은 酒類販賣場에서 場內消費를 위하여 一般利用客에게 酒類를 販賣 또는 提供하기 위해 維持, 經營되고 있으며 眞正한 公開食堂과 같이 食事を 一般利用客에게 販賣 또는 提供하는 것은 아니지만 酒類의 販賣 또는 提供에 부수하여 管理厅의 規定에 따라 食品을 販賣 또는 提供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店內消費 麥酒販賣免許를 付與 받은 販賣場에서 眞正公開食堂과 같이 一般利用客에 對하여 食事を 販賣 또는 提供할 수가 없으며 또한 管理厅의 規定하는 規則에 따라 샌드위치, 사라다, 디저트 및 其他의 簡易食品을 販賣 또는 提供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

(b) 公開酒類販賣場에는 鐵道の 食堂車 또는 特別客車, 客船, 旅客機 또는 一年 以上 適法의 으로 管理되어 온 眞正한 클럽을 包含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州公園 制度上의 特別機關, 第24045. 5 條에 의한 許可以外的 臨時 店內消費 麥酒販賣免許에 根據하여 營業을 行하는 酒類販賣場, 店內消費 麥酒販賣免許가 주어져 있는 競技場, 公會堂 屋外市場 또는 競馬場도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3040 (州內)

州內란 California州의 境界線 안에 있는 全地域을 말한다.

§. 23041 (州外)

州外란, California州의 境界線 밖에 있는 全地域을 말한다.

§. 23042 (委員會)

委員會란 州憲法 第20條 22項에 의하여 同機關에 留保되어 있는 稅에 關한 權限 및 義務를 行使하는 州公平委員會를 말한다.

§. 23043 (管理厅, 管理厅长官)

管理厅이란 酒類管理厅을 말하며 管理厅长官이란 酒類管理厅长官을 말한다.

§. 23044 (免許)

免許란 管理厅이 本法에 根據하여 發行하는 것을 認定받고 있는 免許를 말한다.

§. 23045 (不服審査委員會)

不服審査委員會란 酒類管理法 不服審査委員會를 말한다.

§. 23046 (航空會社)

航空會社란 民間航空局 또는 그 承繼人, 혹

은 公益事業委員會 또는 그 承繼인이 發行하는 公共의 便益 및 必要한 證明書에 根據하여 一定의 目的地間의 定期的인 航空輸送을 行하는 者를 말하며, 航空機란 航空會社에 의하여 航空輸送에 있어 運用되는 飛行機를 말한다.

§. 23047 (定期便)

定期便이란 航空會社의 正規로 予定되고 廣告되어 있는 飛行便을 말하지만 當該 飛行予定에 따라 現實로 行해지는 日日的 航空機 運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CHAP1. 5. 酒類管理庁 및 救濟手續

第 1 節 酒類管理庁

§. 23049 (本章의 目的)

本章을 規定하는 立法府의 目的은 California 州의 全地域에 酒類管理法을 嚴格, 誠實, 公平, 나아가 統一的으로 執行 및 實施하는 것을 保障하는 行政組織을 定하는데 있다.

§. 23050 (管理庁의 設置)

州政府內에 酒類管理庁을 둔다. 管理庁은 酒類管理庁長官으로 呼稱되는 行政官에 의해 管理하는 것으로 한다.

管理庁長官은 州憲法 第20條 22項의 規定에 따라 任命되고 執務하는 者로 하고 行政 第2編 第3部 과-트1 第6章에 規定하는 年間 給與를 받는 것으로 한다. 管理庁長官은 知事가 主宰하는 參事會의 構成員이 된다. 管理庁長官은 그의 就任 前에 州政府에 對해 保証金으로서 25,000\$의 公債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3051 (州公平委員會의 權限 等の 承繼)

1955年 1月 1日 以後 管理庁은 州憲法 20條 22項 및 本法에 따라 州公平委員會에 授權되어 있는 모든 權限, 義務, 目的, 責任 및 管轄權을 承繼하는 것으로 한다. 但, 州內에 있어서의 酒類의 製造, 輸入 및 販賣에 關하여

法律에 의해 부과되거나 또한 부과될 것으로 하는 稅를 賦課 및 徵收하는 權限은, 公平委員會의 專屬的 權限으로서 同委員會에 留保되는 것으로 한다.

酒類에 關하여 州公平委員會에 適用되어온 모든 法律은 稅에 關하는 것을 除外하고, 今後 管理庁에 適用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으로 한다. 公平委員會에 의해 發行되고 또한 1954年 12月 31日에 効力을 갖고 있는 免許는 1955年 1月 1日 以後 管理庁의 發行한 免許로 간주되는 것으로 한다.

§. 23052 (行政法의 準用)

行政法 第2編 第3部 과-트1 第2章의 規定은 同規定이 本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모든 點에 關하여 管理庁의 行爲를 拘束하고 同行爲에 準用되는 것으로 한다. 上記規定中の 各省庁의 長官, 其他 類似한 名稱은 本條의 適用上 管理庁長官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 23053 (管理庁長官의 權限)

管理庁長官은 管理庁의 모든 職員의 任命權者로 하는 것으로 하고 管理庁의 모든 部局 및 其他의 職員의 長은 그의 地位에 따르는 義務 및 責任의 適切한 履行에 關하여 管理庁 長官에 對해 責任을 지는 것으로 한다.

§. 23053. 5 (職務執行)

管理庁은 本法 第10章 11章 및 15章 그리고 이들의 規定에 關하는 管理庁 規則에 對하는 違反에 對해 調査를 行하는 權限을 갖는 것으로 한다. 이들의 規定을 適切하게, 나아가 嚴格하게 執行하기 위해 同職務의 資金으로서 다음 資金이 據出되는 것으로 한다. 本法의 其他의 規定에 根基하여 納付되는 免許料 外에 다음 免許保有者는 아래의 金額을 管理庁에 對해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 (a) 店外消費全酒類小賣販賣免許 … 年間24 \$
- (b) 精溜者免許 ……………… 年間52 \$

- (c) 蒸溜酒都賣人免許 年間52 \$
- (d) 蒸溜酒製造者代理人免許 年間52 \$
- (e) 蒸溜酒製造者免許 年間52 \$
- (f) 蒸溜酒一般輸入者免許 年間52 \$
- (g) California 와인 釀造者代理人免許 ...
..... 年間52 \$

上記金額은 當該 免許가 發行될때 또는 그의 移轉時 納付하는 것으로 하고 每年의 更新 免許料의 納付日로 定해져 있는 期日에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第23322條의 規定은 本條에 따라 納付되는 金額에 對해 準用하는 것으로 한다. 第25761條의 規定은 本條에 따라 納付되는 金額에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當該金額은 直接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入金되는 것으로 한다.

§. 23054(職員의 移管)

本章의 効力發生日에 있어서 公平委員會에 州公務員으로서 勤務하고 本章에 따라 酒類管理庁에 移管되는 職務에 從事하고 있는 모든 者는, 管理庁에 移管되어 州憲法 24條 및 本章에 根據하여 繼續하여 効力を 가지며 또한 새롭게 制定되는 法令에 따라 州公務員으로서 各自의 職位를 維持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따르는 職員의 移管은 州公務員法에 따라 管理庁長官이 管理庁의 組織改正 權限, 移管의 前後를 不問하고 不適任, 不効率, 重大한 過失 또는 其他의 法律이 定하는 懲戒 事由를 理由로 하는 移管職員을 懲戒하는 權限 및 公務員法에 따라, 財政資金의 不足을 理由로 하는 職員을 一時 解雇하고 降等을 行하는 權限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23055(資金의 移管)

本節에 根據하여 酒類管理庁에 移管되는 職務의 遂行을 위하여 公平委員會의 使用에 提供되고 있는 資金의 未使用資金殘高는 1955年 1月 1日 以後 管理庁의 資金으로서 使用되는 것으로 하고 同職務에 關聯되는 公平委員

會의 모든 帳簿, 書類, 記錄 및 財産은 管理庁에 移管되는 것으로 한다.

第 2 節 禁止行爲

§. 23060(禁止行爲)

酒類管理廳長官 또는 酒類管理法不服審査會의 委員은 다음의 行爲를 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a) 酒類管理法에 根據하여 免許 또는 許可의 申請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받는 者로부터 直接 또는 間接으로 手數料 또는 利益을 받는것.

(b) 免許權者의 營業 또는 고의 事業場에 關하는 賣買契約 또는 保險契約에 關하여거나 또는 利害關係를 갖는것.

(c) 免許事業場에 있어서 使用되는 備品の 販賣契約에 關하여거나 또한 利害關係를 갖는것.

(d) 利益을 주거나 또는 寄付를 하기 위하여 惡意로 免許權者에게 티켓의 購入을 권유하는 것.

(e) 特定의 者의 利益 때문에 金錢, 其他의 有價物을 寄付하거나 또는 受取하는 것을 惡意로 免許權者에게 要求하는 것.

本條에 違反한 者는 解任되는 것으로 한다.

第 3 節 酒類管理法不服審査委員會

§. 23075(委員會의 創設)

州政府에 酒類管理不服審査委員會를 設置한다. 同委員會의 委員은 州憲法 第20條 22項의 規定에 따라 任命되고 職務를 遂行하는 것으로 하고 行政法 第2編 第3部 4-트 1 第6章에서 規定하는 年間 給與를 받는 것으로 한다.

§. 23076(委員會의 職員)

酒類管理法 不服審査委員會의 全職員은 委員會에 依해 任命되고 指示를 받으며 그의 管理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管理廳長官은 委員會의 管理에 必要한 備品, 消耗品 및 住宅을 提

供하는 것으로 하고 委員會와 管理廳長官의 合意에 따라 其他의 管理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 23077(委員會의 權限)

酒類管理法 不服審査委員會는 州憲法 第20條 第22項에 의해 여기에 付與된 權限을 行使하는 것으로 하고 그의 管轄權限內에 있어서 必要로 하는 審査請求 其他의 事項에 하는 規則을 制定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委員會 및 正當하게 授權된 代表者는 本章에 根據하는 職務의 履行에 關하여 行政法 第11180條부터 第11191條까지에서 規定하는 「各省廳의 長」으로서의 權限을 갖는 것으로 한다.

第4節 管理廳의 決定에 對한 審査請求

§. 23080(決定)

本節이 말하는 '決定' 이란 罰金을 부과하거나 또는 免許에 影響을 주는 管理廳의 決定이며 州憲法 第20條22項에 根據하여 委員會에 對하여 審査請求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3081(審査請求의 提出期限)

管理廳의 最終決定에 對해 不服하는 者는 廳의 最終決定의 再審理를 命할 수 있는 最終日以後 10日以內에 當該決定에 關하여 委員長에 對해 審査請求를 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審査請求는 書面에 의한 것으로 하고 審査請求를 行하는 理由를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審査請求書의 寫本은 請求者에 의해 管理廳에 있어서 不服申立手續에 參加한 關係者 및 以後 모든 점에 關해 當該 審査請求에 對해 당사자로서 取扱되는 管理廳에 對하여 郵送되는 것으로 한다. 委員會에 審査請求를 要求 하는 權利는 管理廳에 對해 不服申立을 하고 再審理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아무런 影響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3081.5(委員會에 審査請求書가

提出된 날)

委員會에 對한 審査請求는 委員會의 主된 事

務所가 이를 受領한 날에 提出이 行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 內容證明郵便에 의해 郵送되는 審査請求는 聯邦郵遞局에 登錄된 날에 委員會에 提出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 23082(決定의 効力發生期間)

管理廳의 決定은 審査請求의 提出을 行할수 있는 期間內에는 그 効力이 發生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審査請求의 提出은 委員會에 依한 最終命令이 내려지기까지의 사이, 當該決定의 効力發生을 停止시키는 것으로 한다.

§. 23083(委員會에 依한 審査請求에 對한 決定)

委員會는 管理廳의 記錄 및 당사자가 提出하는 것을 認定받고 있는 概要說明書에 根據하여 決定을 行하는 것으로 한다. 審査請求의 어떠한 當事者가 委員會에 出頭하여 直接 口述說明을 行할 것을 要求했을 경우 委員會는 口述說明을 시키기 위한 日時 및 場所를 決定하는 것으로 한다. 委員會는 管理廳의 手續記錄에 나타나 있는 以外의 證據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084(委員會에 있어서 審査되는 事項)

委員會에 의한 管理廳 決定의 審査範圍는 다음의 事項에 限定하는 것으로 한다.

(a) 管理廳이 그의 管轄權限이 없는데도 또한 그의 範圍를 넘어서 事案을 處理했는가 아닌가.

(b) 管理廳이 法律이 要求하는 方法에 의해 手續을 進行시켰는가 아닌가.

(c) 決定이 事實 認定에 의해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d) 事實 認定이 全 記錄에 비추어 實質的 證據에 의해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e) 管理廳의 聽聞에 있어 相當한 職務遂行上 採用되지 않았던 또는 不當하게 排除된 關聯證據가 있는가 아닌가.

§. 23085 (命令의 返戻 取消命令)

管理廳에 있어서의 聽聞에서 상당한 職務遂行上 採用되지 않았던 또는 不當하게 排除된 關聯證據의 존재를 위원회가 認定한 審査請求 事案에 있어서는 事案을 管理廳에 되돌리고 證據에 비추어 再審理할 것을 命하는 決定을 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其他의 모든 審査請求 事案에 있어서는 委員會는 管理廳의 決定을 확인하느냐 또는 취소하느냐의 命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決定의 取消命令의 경우는 委員會는 當該 事案을 上記命令에 비추어서 再審査해야만 하는 趣旨 또는 法律에 의해 특히 管理廳에 對해서 命令되는 追加行爲를 行할 것을 管理廳에 對해 命할 수가 있다. 단 當該命令은 法律에 의해 付與된 管理廳의 裁量權을 어떠한 形式에 있어서도 制限 또는 抑制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086 (命令을 내려야 할 期間)

모든 事件에 있어서 委員會는 審査請求가 提出된 60일 이내에 命令을 決定하는 것으로 한다.

§. 23087 (和解 등에 根據하는 事件의 되돌림)

管理廳과 免許權者間的 爭訟에 關한 事件이 委員會 또는 記錄裁判所에 계류중 審査請求 申立人 또는 原告와 當事者와의 사이에 和解 또는 調停이 合意되는 경우는 裁判所는 그의 合意의 成立된 約定에 따라 當該事件을 管理廳에 對해 返戻하는 것으로 한다.

§. 23088 (終局命令)

管理廳의 決定에 대한 審査請求에 關한 委員會의 命令은 書面으로 하여 그 寫本을 兩當事者에 대해 直接 引渡하거나 또는 配達證明 郵便에 의해 送付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命令은 本條 規定에 따라 送付되는 것으로서 確定하는 것으로 하고 以後 委員會에 의한 再審理

또는 再聽聞은 行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3089 (裁判所에 의한 再審理)

委員會의 終局命令은 本章 第5節에 明示된 裁判所에 의해 同節에 規定되고 있는 期間 및 方法에 따라서만이 再審理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第5節 司法審査

§. 23090 (訴訟의 提起期間)

委員會의 終局命令에 의해 影響을 받는 者(管理廳을 包含)는 本條에 明示된 期間內에 最高裁判所 또는 審査手續이 行해진 地域을 管轄하는 控訴裁判所에 對해 最終命令에 對한 司法審査를 하기 위한 令狀을 求하는 訴訟을 提起할 수가 있다.

司法審査를 위한 令狀을 求하는 訴訟의 提起는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내려진後 30日以内に 行해지는 것으로 한다.

§. 23090.1(事件記錄의 認證)

司法審査令狀은 裁判所의 命令에 의해 定해진 日時 및 場所에 있어 回付되는 것으로 하고 나아가 委員會에 對해 그 指定한 時間內에 當該事件에 關하는 管理廳의 全 記錄을 裁判所에 對해 認證해야 한다는 것을 指示하는 것으로 한다.

裁判所에 있어서 新規 또는 追加의 證據를 提出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한다. 단, 事件은 委員會가 認證한 管理廳의 事件에 關한 全 記錄에 根據하여 審理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 23090,2(司法審査의 範圍)

司法審査의 範圍는 委員會에 의해 認證된 管理廳의 全 事件記錄에 根據하여 다음의 事項을 確定하는 것에 制限된다.

(a) 管理廳이 그의 管轄權 없이 또는 그의 範圍를 넘어서 手續을 進行시켰는가 아닌가.

(b) 管理廳이 法律이 義務지운 方法에 根據하여 手續을 進行시켰는가 아닌가.

(c) 管理廳의 決定이 事實認定에 依해 뒷받침되어 있는가 아닌가.

(d) 事實認定이 全 事件 記錄에 比추어 實質的 證據에 依해 뒷받침 되어 있는가 아닌가.

(e) 管理廳의 聽聞에 있어 상당의 注意下에 서 採用되지 않았던 關聯證據 또는 不當하게 排除된 關聯證據가 있는가 아닌가.

本節의 規定은 裁判所가 證據를 採用하고 證據에 對한 獨自의 判斷을 行하기 위하여 새로운 審理를 行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한다.

§. 23090,3 (事實問題)

事實問題에 關해 管理廳의 認定 및 結論은 確定的 그리고 終局的인 것으로 하고, 司法審查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事實問題에는 確定的인 事實 및 管理廳의 事實認定 및 結論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委員會, 管理廳 및 訴訟 또는 審査手續의 當事者는 司法審查 手續에 參加하는 權力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審理를 마친後 裁判所는 管理廳의 決定을 確認하거나 또는 取消하는 뜻의 判決을 내리거나 혹은 管理廳에 追加手續을 進行시키거나 또는 審理시키기 爲하여 當該事件을 返戻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3090,4 (司法審查의 手續)

民事訴訟法의 再審理 令狀에 關하는 規定은 그에 適用할 수 있는 範圍에 있어 本節에 規定하는 裁判所의 訴訟手續에 對해 準用한다.

本節에 根據하여 提出되는 모든 訴答의 寫本은 審査委員會, 管理廳 및 審査手續에 參加한 各 當事者에 對해 送達되는 것으로 한다.

§. 23090,5 (管轄權을 갖는 裁判所)

California州 最高裁判所 및 州控訴 裁判所가 本節에서 規定하는 範圍에서 保有하는 權限을 除外하고 州內의 어떠한 裁判所도 管理廳의 命令, 規則 또는 決定에 對해 司法審查를 行하고 이들을 確認, 取消, 訂正 또는 無

効로 하거나 혹은 管理廳의 業務行爲 또는 執行行爲를 停止, 延期 또는 遲延시키거나 또는 管理廳의 職務履行을 抑制 또는 禁止시키고 혹은 여기에 介入하는 權限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特定하게 認定된 事件에 있어서는 州最高裁判所 또는 控訴裁判所는 指圖令狀을 發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3090,6 (管理廳 決定의 執行延期)

司法審查 令狀을 求하는 申立의 提起 또는 그의 訴訟係屬은 그의 事實만에 依해 管理廳의 命令, 規則 또는 決定의 執行을 延期시키거나 또는 停止시키는 것은 아니다. 단, 當該申立의 提起를 받는 裁判所는 그의 命令에 의해 指示하는 條件에 根據하여 管理廳의 命令, 規則 또는 決定의 執行의 全部 또는 一部를 延期시키거나 停止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23090,7 (終局命令의 効力發生時期)

委員會에 審査請求가 行해진 管理廳의 決定 및 委員會의 終局命令은 第23090條에 規定하는 司法審查令狀의 申請을 申立할 수 있는 期間內에는 効力を 發生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6節 免許停止의 中止

§. 23095 (和議賦課金 納付의 申請)

(a) 30日以下의 免許停止를 命하는 管理廳決定이 免許權者가 決定에 對해 審査請求를 行하지 않는 것. 또는 모든 爭訟手續이 終了한 것에 依한 것을 不問하고 確定된 경우 免許權者는 免許停止期間의 開始前에 管理廳에 對하여 免許停止에 代하는 和議 賦課金 納付의 許可를 行할 것을 申請할 수가 있다. 收納된 和議 賦課金은 酒類管理資金에 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申請을 受理한 管理廳은 免許停止의 執行을 中止하고 必要로 하는 調査를 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申請이 다음의 條件을 充足시키는 경우 當該申請을 認定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免許停止를 豫定하는 期間에 免許權者에게 營業을 認定하는 것으로 因해 公共의 福祉 및 道德이 害처지는 일이 없고 나아가 和議賦課金の 納付가 懲戒目的을 充分히 達成하는 것일 것.

(2) 免許停止가 執行되는 경우 免許權者가 있는 酒類賣上高의 減少를 確定할 수 있는 帳簿 및 記錄이 記帳되고 保管되어 있을 것.

和議賦課金の 申請金額은 免許停止期間中の 推定酒類總賣上高의 20%에 相當하는 額으로 하고 단 250달러未滿 또는 2,000달러가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b) 本法 中の 기타의 規定에 不拘하고 管理廳은 小賣販賣 免許權者에 의한 和議賦課金納付의 申請으로서 免許停止 期間의 推定酒類總賣上高의 20%에 相當하는 額으로 또한 100달러以上 500달러以下의 額의 納付를 承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申請人인 小賣販賣免許權者에 對해 當該申請이 있었던날以前 3年間に 當該小賣販賣免許를 停止하거나 또는 取消決定이 내려지는 基礎가 되었던 告發이 管理廳으로부터 當該小賣販賣免許權者에 對해 行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한다. 本項은 第24755,1條의 規定에 影響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c) (a)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小賣販賣以外의 免許權者에 의한 和議賦課金の 申請額은 그의 申請免許停止期間中の 推定酒類總賣上高의 20%에 相當하는 額으로 하고 나아가 1萬달러를 넘지 않는 金額으로 한다. 단, 免許權者가 他의 免許權者에 對해 違法的 誘引, 秘密할인 또는 1萬달러를 넘는 價値의 無價物品을 供與한 것에 의해 第25500條, 第25502條, 第25503條 및 第25600條에 違反했을 경우에는 그의 違法 誘引額, 秘密할인額, 無價物品의 價格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한다.

本項에 根據하여 徵收되는 和議賦課金은 第

25761條에 規定하는 酒類管理資金이 아니라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直接 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 23096 (酒類管理資金의 編入)

第23095條에 根據하는 和議賦課金の 納付金은 酒類管理資金에의 編入을 爲하여 州財務省에 支拂하는 것으로 한다. 和議賦課金の 納付가 있었을 경우 管理廳은 免許停止를 완전히 中止한다는 趣旨의 命令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 23097 (免許停止의 中止)

和議 賦課金 納付의 申請에 關해 管理廳의 權限은 調査를 實施하고 事實認定을 行하기 위해 必要한 範圍이며 免許停止를 中止하고 調査를 實施하여 이에 의한 認定事實에 根據하여 免許停止의 全部 또는 一部를 確定的으로 中止하는 것에 限定된다. 免許의 停止가 他의 公務員에 의한 訴訟의 結果로서 課해진 것의 경우는 廳은 當該 公務員의 書面에 의한 同意가 없을 경우에는 免許停止를 確定的으로 中止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098 (免許停止 効力의 發生日)

管理廳이 第23095條에 의해 要求되고 있는 事實認定을 行하지 않고 免許停止를 確定的으로 中止하는 趣旨의 命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免許停止는 管理廳이 最終적으로 定한 그의 實施日에 効力を 發生하는 것으로 한다.

Chap 2. 法律上 認定되는 無免許取扱等

§. 23100 (免許權者였던 者)

免許의 取消, 포기 또는 更新이 行해지지 않았던 後에 있어서 適法하게 取得한 酒類의 在高品을 保有하는 者는 管理廳의 監督下에서 管理廳이 定하는 規則에 따라 在庫品을 酒類의 販賣免許를 所有하고 있는 免許權者에게 販賣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3101 (銀行이 保有하는 酒類倉庫증권 또는 酒類)

債務의 擔保로서 또는 擔保權의 實行의 結果로서 酒類 또는 그의 倉庫증권을 保有하는 銀行, 信託會社 또는 金融機關은 管理廳의 許可를 얻어 酒類 또는 그의 倉庫증권을 販賣하는 것을 認定받고 있는 免許權者에 對해 賣却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23102 (免許權者의 遺産管理人 等)

(a) 免許權者인 自然人이 死亡하고 支拂不能 또는 行爲無能力이 됐을 경우 免許權上의 權限은 30日間 또는 遺産管理人, 遺言執行者, 後見人, 財産管理人, 收益管理人, 受託者 혹은 死亡者, 支拂不能者 또는 行爲無能力者인 免許權者의 財産을 總債權者의 利益을 위해 管理하는 管財人이 指名될 때까지 行爲能力이 있는 남은 共同免許權者가 이를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能力을 갖는 共同免許權者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 免許權上의 權限은 死亡했거나 또는 行爲無能力者가 된 免許權者 또는 그의 遺産에 對해 代理權限을 갖는 者가 이를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b) 本條(a)項에 의해 認定되는 期間이 終了됐을 경우 免許權上의 權利는 免許權의 移轉이 없을 경우에는 그後 60日間, 免許가 移轉됐을 경우는 거기에 더하여 60日間の 期間동안 遺言管理人, 遺言執行者 後見人, 財産管理人, 收益管理人, 受託者 혹은 死亡者, 支拂不能者 또는 行爲無能力者인 免許權者의 財産을 總債權者의 利益을 위하여 管理하는 管財人에 의해 行使되는 것으로 한다. 共同行爲를 行할 것이 法律上 義務가 지워져 있을 경우에는 共同免許權者와 共同하여 行爲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本項이 定하는 60日間の 期間은 正當한 事由가 存在할 경우 管理廳이 延長시킬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c) (b)項에 의해 認定되는 期間 및 그의 延長期間의 終了前에 第24071條 其他의 規定에 根據하는 免許의 移轉申請이 提出되어 있을 경우에는 (b)項에 根據하여 免許權上의 權利를 行使하는 者는 移轉申請이 認定되느냐 또는 拒絶되느냐 하는 동안 斷續해서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d) 免許가 歲入 그리고 課稅에 關한 法律 (Revenue and Taxation Code) 第32005條에 規定되어 있는 納稅者에 對해 주어져 있었을 경우 本條에 根據하여 免許權上의 權利를 行使하는 者는 納稅者로 간주되어 歲入 그리고 課稅에 關한 法律 第2部 4-트 14의 目的을 위하여 保證金을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 23104 (保險業者, 運輸業者)

保險業者 또는 輸送酒類의 損失에 對해 保險業者와 같은 責任을 지는 運輸業者는 管理廳으로부터 許可를 付與받은 後, 火災 其他의 事故에 의해 容器에 損傷을 받은 酒類를 取得하여 이들 酒類의 販賣를 認定받고 있는 免許權者에게 賣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資格을 부여받고 있는 免許權者는 賣却을 認定받은 保險業者 또는 運輸業者로부터 酒類를 購入하고 그의 引渡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의 許可는 免許權者가 所有하고 또한 申請을 行하는 保險業者 또는 運輸業者에 의해 損失 또는 損害에 對한 保險이 約定되어 있었던 酒類에 關해서만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本章에 根據하여 賣却되는 酒類는 그의 賣却前 및 賣却時에 있어서 火災, 海難 其他 類似의 災害로부터 救出되었던 被害商品이라는 것을 라벨上 또는 其他의 方法에 의해 表示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當該 라벨 또는 表示는 商品의 正規라벨上에 添付되어 當該表示는 製造者에 의해 添付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趣旨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한다.

§. 23104,1(와인의返品 및 交換)

小賣人は 그의 賣主 또는 그의 承繼人에 對해 와인을 返品할 수가 있고 當該賣主 또는 그의 承繼人は 返品된 와인을 받아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받아드린 날로부터 1年間은 다음의 경우를 除外하고 當該小賣人에 對해 와인을 販賣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a) 와인이 同一品銘 및 同一品目の 同量の 와인과 的 交換을 위하여 返品되는 경우.

(b) 裁判所의 命令에 따라 返品되는 경우.

(c) 返品되는 와인의 品銘, 品目이 賣主 또는 그의 承繼人에 의해 販賣中止된 와인이며 類似의 品銘 또는 品目の 同量の 와인과 交換되는 경우.

(d) 引渡를 받은 와인이 小賣業者에 의해 注文되어진 것이 아니거나 또는 注文된 數量과 相違하는 경우.

이 경우 小賣人は 그의 引渡後 15日 以内에 注文한 와인과 交換하기 위해 賣主 또는 그의 承繼人에게 返品하거나 또는 引渡를 받은 實際의 注文을 超過하는 量의 와인을 返品할 수가 있다. 本項에 根據하는 返品은 引渡의 날로부터 15日 經過後에 있어서는 管理廳의 書面에 의한 承認을 받아 이를 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e) 와인의 品質이 低下했거나 또는 그의 容器가 損傷되었거나 혹은 와인의 라벨 또는 容器가 變更되었을 경우에 있어 當該 와인이 返品되어 同一品銘 및 品目の 와인으로 同一容器의 것으로 交換될 경우.

本項中 '同一品種의 와인' 이란 California州 管理法(California Administrative Code) 第17編의 同一性 그리고 品質의 標準에 關하는 第17005條부터 第17050條까지의 規定에 있어 同一Class로 定義되어 있는 와인으로써 同一稅率의 州稅를 負擔하는 것을 말한다. 本條에 根

據하여 返品되어 交換되는 와인은 同一小賣金額의 提示價格의 것이어야 한다. 와인 또는 그의 容器가 損傷 또는 品質低下 되었을 경우에 있어 그의 賣主가 本法에 根據하여 免許되어 있는 營業을 廢止하고 있고 또한 그의 營業을 承繼하고 있는 者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 小賣人は 管理廳의 承認을 받은後 本項의 規定에 定하는 賣主 또는 그의 承繼人에게 返品하는 경우와 同一한 條件에 의해 그의 와인을 同一品銘 또는 同一品目の 와인을 取扱하고 있는 釀造者 혹은 都賣人에 對해 返品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管理廳에 의한 承認은 本法(d)項의 規定에 根基하는 引渡의 日字부터 15日間 經過後에 行해지는 返品 또는 本項의 前段에 根據하여 行해지는 返品에 對해서만 必要로 하는 것으로 한다.

(f) (a), (c) 및 (e)項에 있어 쓰여지고 있는 '同量' 이란 實質적으로 同量の 와인이 들어있는 Meter法 度量法 容器入의 와인 및 合衆國標準 度量法 容器入의 와인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23104,2(麥酒의返品 및 交換)

(a) 小賣人は 同一品銘의 同量の 麥酒와 交換하기 위해 麥酒를 그의 賣主에 對해 返品할 수가 있고 賣主는 이를 받아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小賣人에 對해 麥酒를 販賣하는 것을 認定받은 免許權者는 引渡된 麥酒가 小賣人の 注文한 品銘 또는 容器Size와 다를 경우 혹은 引渡를 받은 量이 注文했던 量과 다를 경우를 除外하고 返品을 받아드려서는 안된다. 引渡前 또는 引渡時에 있어 패키지가 破損 其他의 損傷을 받고 있을 경우, 小賣人에 引渡된 日字부터 15日 以内에 返品 및 是正이 完了할 때는 同一패케이지의 提供에 의한 交換의 대신으로서 返品패케이지에 對한 信用메모를 發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b) (a)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賣主는 免許期

限의 到來日에 팔다 남은 麥酒가 있을 경우에는 季節的 또는 期限付 免許權者로부터 팔다 남은 麥酒의 返品을 받아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 期間을 定해서 營業을 行하고 있는 通常의 年間 免許權者로부터 期間의 終了日에 있어서 팔다 남은 麥酒의 返品을 받아드릴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23104,3(蒸溜酒의 返品 및 交換)

小賣販賣 免許權者는 蒸溜酒를 輸入한 都賣人, 精溜者, 製造者 또는 이들의 承繼人에 對해 蒸溜酒를 返品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都賣人, 精溜者가 本法에 根據하는 免許의 發行을 받은 營業을 廢止하고 營業을 承繼하는 者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는 管理廳의 承認을 得한後, 他의 都賣人, 精溜者 또는 製造者에 對해 返品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小賣販賣 免許權者는 蒸溜酒의 패케이지를 當該 패케이지를 購入했던 相對方인 製造者, 精溜者, 또는 都賣人이었던 아니든 不問하고 製造者, 精溜者 또는 都賣人과의 사이에 있어 品銘의 類似패케이지와 交換을 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3104,4(無免許者의 遺産中의 酒類의 處分)

死亡時에 있어 免許를 保有하고 있지 않았으나 遺産에 酒類가 包含되어 있는 死亡者의 遺産管理인 혹은 遺言執行者 또는 財産中에 酒類가 包含되어 있는 無能力者의 後見人 혹은 財産管理인은 管理廳이 定하는 規則에 따라 當該酒類를 그의 販賣를 認定받고 있는 免許權者에게 賣却하는 것을 認定받는다.

本法의 規定은 賣却行爲가 第24045,8 條의 根據에 따라 行해지는 경우 遺言執行者 遺言管理者, 後見人, 財産管理인 또는 競賣人等 死亡者의 代理人으로서 行爲하는 者가 酒類財産等에 包含되는 瓶入 와인을 無免許者에게 賣却하는 것을 禁止 또는 制限하는 것은 아니다.

§. 23104,5(判決의 執行에 根據하는 賣却) 權限을 갖는 裁判所에 의해 任命된 執行官 其他의 者는 判決의 執行令狀에 따라 또는 裁判所의 命令을 執行하기 爲하여 酒類를 販賣하는 것을 認定받고 있는 免許權者에게 酒類를 賣却할 수가 있다.

本法의 規定은 賣却行爲가 第24045,8 條에 根據하여 行해지는 경우 執行人等 裁判所의 命을 받은 者가 酒類財産에 包含되는 瓶入와인을 無免許權者에게 賣却하는 것을 禁止 또는 制限하는 것은 아니다.

§. 23105(倉庫業에 의한 賣却)

倉庫業者는 倉庫證券法에서 規定되는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해 管理廳이 定하는 規則에 따라 酒類를 販賣하는 것을 認定받고 있는 免許者에 對해서 酒類를 賣却할 수가 있다.

§. 23106(倉庫에의 貯藏)

(a) 合衆國內國歲入法에 根據하여 保稅倉庫로 되어있는 와인 釀造所 또는 와인倉庫에 貯藏되는 와인 및 內國稅 歲入法上의 保稅倉庫에 貯藏되는 벌크 브랜드에 關해 倉庫스페이스를 提供하는 者의 免許는 必要없는 것으로 하고 모든 免許權者에 의해 또는 免許權者를 爲해 貯藏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b) 歲入과 더불어 課稅에 관한 法律 第2部과-트 14에 規定하는 稅의 納付濟의 麥酒 및 와인은 스페이스를 提供하는 者에 對한 免許의 必要性 또는 免許權者에 對한 特別免許는 必要性이 없는 것으로 하고 私用倉庫 또는 一般倉庫 혹은 其他 州內의 場所에 모든 免許權者에 의해 모든 免許權者를 爲하여 貯藏할 수 있다.

(c) 其他의 酒類는 免許權者의 免許事業場이 存在하는 郡內의 私用倉庫(管理廳의 承認을 받고) 또는 一般倉庫에 免許權者에 의해 또는 免許權者를 爲하여 特別한 免許를 받는 일 없이 貯藏할 수 있다. 一般倉庫가 合衆國 稅關保稅

倉庫, 合衆國內國歳入保稅倉庫 또는 合衆國保稅와인倉庫인 경우는 免許事業場이 存在하지 않는 郡의 倉庫에 貯藏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다.

§. 23107 (州外에 있어서의 使用을 爲한 酒類의 購入)

어떠한 者도 管理廳이 定하는 規則 및 規制에 따라 州外에 있어서의 酒類의 引渡 또는 使用目的으로 州内에서 酒類를 購入하거나 引渡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하고 州内에 있어서 免許를 받는 일 없이 그의 購入日로부터 90日 以内に 이를 當州로부터 輸出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23108 (他州 免許權者에 依한 브랜드倉庫證券 等の 購入)

他州의 免許權者는 州内에 있어서 製造되고 州内の 內國歳入保稅倉庫에 貯藏되어 있는 벌크, 브랜드를 購入하거나 또는 州内에 있어 貯藏되어 있는 브랜드의 倉庫證券을 購入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州内에 있어 免許를 받지않고 管理廳이 定하는 規則에 따라 當該브랜드를 輸出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納稅者에 依한 本條에 根據하는 他州의 免許權者에 對한 브랜드 또는 同倉庫證券의 販賣는 歳入과 課稅에 關하는 法律 第32201條에 의 한 稅를 免除받게 되는 것으로 한다.

§. 23109 (繼續的 通過輸送)

酒類의 州内の 繼續的 輸送은 酒類가 運送業者에 所持 또는 管理되고 있는 동안에 限해 本法의 適用을 免許받는다.

管理廳은 어느 누구에 對해서도 그의 指定하는 形式에 따르는 宣誓書를 要求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고 州의 境界에 있어서 貨物檢査의 要求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宣誓書作成의 要求 또는 酒類의 檢査를 拒絶한 者는 輕罪의 罪責을 지는 것으로 한다.

§. 23110 (變性알콜)

本法은 合衆國政府의 各種의 制定法 및 規則上의 完全非變性 에칠알콜 또는 特殊變性 알콜의 製造 販賣 및 使用에는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3111 (非課稅알콜)

本法은 合衆國政府 財務省의 規制에 根據하는 非課稅 에칠알콜을 州 또는 聯邦의 政府機關, 自然科學大學 또는 科學研究를 爲하는 것만으로 이를 利用하는 研究所, 病院 및 療養所가 利用하는 行爲에 對해 어떠한 禁止 또는 制限을 加하는 것은 아니다.

§. 23112 (飲用 以外の 製品)

本法은 飲料에 不適한 것의 경우에는 다음 의 製品에 있어서 非課稅알콜, 工業用알콜 또는 其他의 合衆國 政府의 規制를 받는 蒸溜酒 또는 와인을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거나 또는 拘束制限하는 것이 아니다.

(a) 醫藥品, 製藥品, 防腐劑(登錄藥劑師의 調合한 處方藥을 包含한다)

- | | |
|-------------|----------|
| (b) 化粧室用 製品 | (e) 食料品 |
| (c) 調味用 에센스 | (f) 科學製品 |
| (d) 시럽 | |

§. 23113 (알콜의 包裝規格)

第23111條에서 指摘되는 使用目的을 爲해서 販賣되는 알콜은 1/2파인트(1 파인트는 약 0.47리터(美)) 以上の 페케이지를 使用하며 非課稅로 販賣하는 것으로 한다.

第23112條에서 定하는 處方藥의 調合에 利用하기 爲해 登錄 藥劑師에 對해 販賣되는 알콜은 當該알콜을 販賣하는 免許權者가 稅를 申告하고 이를 納付했을 경우에 1/2以上の 페케이지에 의해 當該藥師에 對해 販賣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依해 認定되는 알콜의 販賣는 商取扱去來, 專門的 職業 또는 工業用에 使用하는 알콜을 販賣하는 것을 認定받고 있는 免許權者에 의해 行해지는 것으로 한다.